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건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2월 15일
발 의 자 : 신건택·최호정·김종욱·문형주
권미경·오경환 의원(6명)
찬 성 자 : 진두생·이명희·송재형·박마루
우미경·이성희·김진영·박운기
서윤기·박중화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노사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실무적으로 조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실무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노사민정협의회외의 실무위원회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실무위원회) ① 협의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2.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
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협의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” 이라 한다)” 를 “협의회, 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” 이라 한다)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“이라 한다)는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,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의2(실무위원회) ① 협의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</p> <p>1.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</p> <p>2.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</p> <p>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, 특별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“이라 한다)는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,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신 건 택